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4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4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4
III. 경영참고사항 .....	5
1. 사업의 개요.....	5
가. 업계의 현황 .....	5
나. 회사의 현황 .....	5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7
□ 회사의 합병.....	7
※ 참고사항.....	84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4월 28일

회 사 명 : (주)삼 호  
대 표 이 사 : 조 남 창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전 화) 032-518-3535  
(홈페이지)<http://www.samh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 이 상 택  
(전 화) 02) 2170-5008

#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0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0년 5월 13일 (수)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

3. 회의 목적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 (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기재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6. 의안 상세내역

'Ⅲ. 경영참고사항'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진기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차	2020.01.30	1안 : 2019년 결산 내부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 제6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안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2차	2020.02.21	용인 신봉동 3BL PF대출 대위변제의 건	찬성
3차	2020.02.25	1안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2안 : 2020년도 기본운영계획 승인의 건	찬성
4차	2020.02.27	제주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책임준공확약서 날인 및 제출의 건	찬성
5차	2020.03.10	거제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책임준공확약서 날인 및 제출의 건	찬성
6차	2020.03.27	1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2안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3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7차	2020.03.31	2020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내부거래위원회	김원태(사내이사)	2020.02.25	2019년 4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이상수(기타비상무이사) 신진기(사외이사)	2020.03.30	2020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 의 건	-

※ 상기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입니다.

※ 상기 사외이사의 찬성여부와 출석률은 임기 내 활동 기준입니다.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2,000	12	1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2020년 1분기말 기준 지급 금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상품·용역거래	2019.01.01~ 2019.12.31	매출	909	7.10
			매입	587	4.59
			계	1,496	11.69

※ 상기 비율은 2019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12,799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매출 매입금액은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거래금액은 2019년 말 기준입니다.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는 수주산업입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로 옥외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며,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분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구조적 요인 등으로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국내경제와 의존관계가 높은 건설산업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 및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건설업도 단순 시공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의 변동과 경제성장의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 4) 국내외 시장여건

세계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제는 거시경제 상황 악화, 정부의 부동산/주택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해온 주택의 명가로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신인도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택사업에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주택사업부문에 역량을 집결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2019년 국내 건설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지속,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관광인프라, 택지, 산업단지 분야에서 실적을 확보하여 작년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건축부문에서는 자동차매매단지, 물류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주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비주택부문의 시장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문에서는 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업성관리를 통해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모두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 절감 및 수익성 양호사업의 확대를 통해 당사는 당기에 매출 12,799억원 및 영업이익 1,430억원, 당기순이익 951억원을 달성하여 전년에 이어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양한 신규 발주처 네트워크 확대 및 사업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을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 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 시공능력순위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토 건	13,064	30	11,316	35	11,810	29

주)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3)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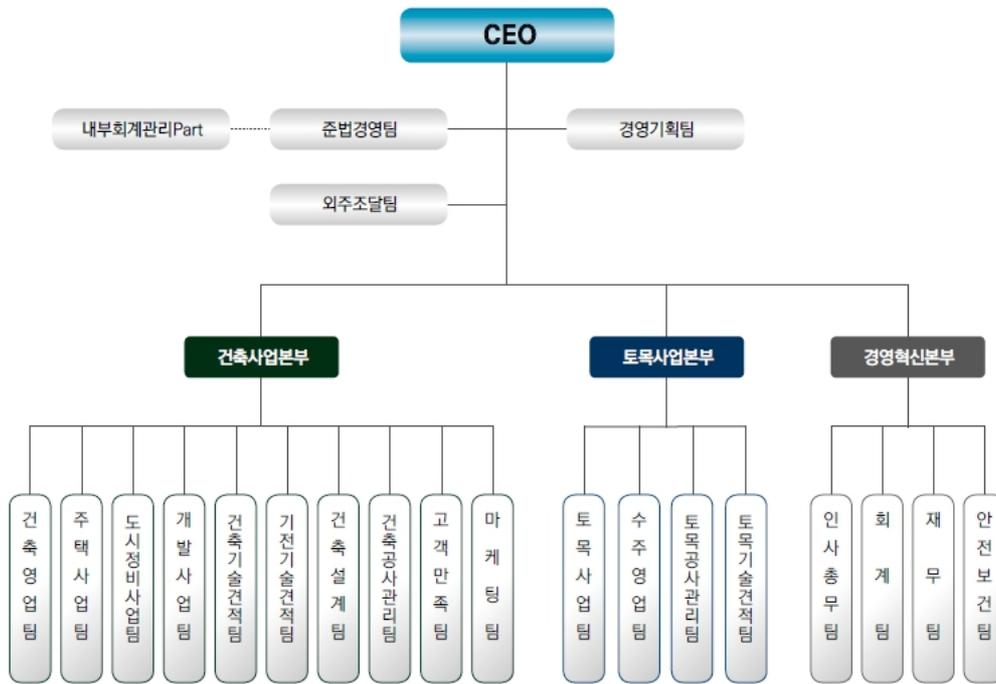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시장은 건축, 토목 분야이며, 이는 경기 상황 및 정부의 건설정책, 법률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축시장은 경기 둔화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토목시장은 정부의 SOC 투자확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 등으로 긍정적인 시장여건이 전망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회사의 합병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삼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대표이사	조남창
	법인가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고려개발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대표이사	곽수윤

(2) 합병 배경

주식회사 삼호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주택사업 분야 노하우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주택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과거 주택사업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 및 건축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1976년 해외건설업 면허 제1호 취득, 1981년 철강재 면허 취득, 국내 오프스텔 건축1호 등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1년 11월 30일자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12월 12일자로 당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실정리 및 사업구조조정, 사업다각화를 통해 2016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루었고, 2019년 11월13일 제 1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기존 강점을 보유한 토목사업 외에 주택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을 대거 수주하는 등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원가율 개선 및 비용 절감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외형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양사간 사업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10위권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합병의 기대효과]

구분	내용
외형 확대	- 외형 확대에 따라 사업영역 및 수주 참여 기회 증가 - 공사 수행능력 확대를 통한 수주경쟁력 강화 -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증가로 개발형 투자사업 참여 여력 개선
사업 시너지 창출	- 양사 강점사업 기반 통합으로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 영업조직 확대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 양사 강점분야 원가관리 역량 공유로 원가율 개선 - 자재 통합 구매 및 우수협력업체망 확대로 조달 구매력 상승 및 원가 절감 - 효율적인 조직 정비 및 경영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그룹 브랜드파워 활용	- 기존의 브랜드 공유를 넘어 회사의 CIO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강화 - 통합법인 사명 변경(대림건설주식회사로 변경 예정)에 따라 외부고객 및 발주처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경쟁력 강화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와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림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의 최대주주는 72.94%를 (보통주 기준) 보유한 대림산업주식회사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74.65% (보통주 기준) 입니다.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44.07%를 (보통주 기준) 보유한 대림산업주식회사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48.05% (보통주 기준)입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74.65% (보통주 기준)에서 66.36% (보통주 기준)로 변동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삼호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고려개발주식회사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 전·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보통주	11,071,821	72.94%	6,706,500	44.07%	14,100,660	63.94%
이해욱	보통주	126,724	0.83%	0	0.00%	126,724	0.57%
이준용	보통주	13,347	0.09%	0	0.00%	13,347	0.06%
이해서	보통주	1,188	0.01%	0	0.00%	1,188	0.01%
(학)대림학원	보통주	118,056	0.78%	27,340	0.18%	130,403	0.59%
(주)캠텍	보통주	0	0.00%	578,291	3.80%	261,172	1.18%
대림산업(주)	우선주	-	-	2,777,775	100.00%	1,254,520	100.00%
합계	보통주	11,331,136	74.65%	7,312,131	48.05%	14,633,494	66.36%
	우선주	-	-	2,777,775	100.00%	1,254,520	100.00%

주1) 합병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내역은 합병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에 따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주식회사 삼호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2020년 05월 13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추가 신규 선임 이사 및 감사]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곽수윤	1968년 08월	사내이사/전무	등기임원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건축학</li> <li>· 前) 대림산업(주) 상무</li> <li>· 고려개발(주) 대표이사</li> </ul>
김명철	1960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li> <li>· 前) 국민은행 전문자문위원</li> <li>· 前) (주)일신테크놀로지 부사장</li> <li>· 에이치앤케이투자(주) 근무</li> </ul>

향후 합병회사는 기존 주식회사 삼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계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 등기일(2020년 07월 02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본 합병을 통하여 외형 확대에 따른 사업부문의 수주규모 및 시장 점유율 증가, 사업효율성 제고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합병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는 주식회사 삼호의 2019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 1조 2,799억원에서 1조 9,649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매출총이익은 1,824억원에서 2,789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영업이익은 1,430억원에서 2,061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당기순이익은 951억원에서 1,294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호의 2019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8,517억원에서 1조 4,651억원(합병당사회사 단순합산 금액 기준)으로 증가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335억원에서 4,04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 증가로 개발형 투자사업에 참여할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실적 상승 및 개선 추세를 보이는 양사간 합병을 통해 경영성과 시너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18년
주식회사 삼호	매출액	12,799	9,656
	매출총이익	1,824	1,273

	영업이익	1,430	909
	당기순이익	951	645
고려개발주식회사	매출액	6,849	5,541
	매출총이익	965	748
	영업이익	631	400
	당기순이익	343	6
합계	매출액	19,649	15,196
	매출총이익	2,789	2,021
	영업이익	2,061	1,309
	당기순이익	1,294	652

자료 : 양사 사업보고서

주) 합계는 양사간 거래 제거 전, 단순합산금액 기준이므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9,303억 수준으로 전망되며(주식회사 삼호 13,064억원, 고려개발주식회사 6,239억원,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의 단순합산금액 기준) 이는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16위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양사의 보유실적 보완 및 공사 수행능력 확대를 통해 입찰참여 가능 분야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브랜드 공유를 넘어 회사의 CI도 통일성을 갖추므로써 시장지위 및 기업브랜드 제고가 기대되고, 이는 경쟁입찰 수주기회 확대 및 분양예정자와 수분양자 등 고객의 브랜드 선호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사업 시너지 확대로 양사의 강점사업 기반 통합을 통해 균형있는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회사 삼호가 보유한 주택분야 노하우와 사업경쟁력 그리고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한 토목 SOC 및 일반건축 분야의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이 결합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대합니다. 또한, 영업조직 확대 및 마케팅, 설계, 재무 등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통해 종합건설업체로서의 총체적인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회사는 주식회사 삼호의 강점분야인 주택분야,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강점분야인 토목 SOC 및 일반건축 분야의 원가관리 역량 공유로 원가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통합 구매 및 우수협력업체망 확대로 조달원가 절감과 효율적인 조직 정비 및 경영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4)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 0.4516274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고려개발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이 보유한 우선주식 1주당 주식회사 삼호 상환전환우선주

식 0.4516274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보통주 1,761주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은 상기 명시한 4가지 합병 시너지를 통해 합병법인의 외형을 확대하고 사업 시너지 창출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합병법인의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통해 채산성 높은 사업을 선점하여 회사 사업가치가 재평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병법인은 실적 증가 및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켜서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2. 합병 당사자(합병 및 피합병회사)의 개요

### [합병회사 : 주식회사 삼호]

####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삼호"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amho International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 (2) 설립일자

당사는 1956년 10월 17일에 주식회사 천광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건설업 진출을 위하여 1974년 4월 9일에 주식회사 삼호주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1년 12월 4일 종합건설업체로 발돋움하면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삼호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3)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에는 일반의 주택, 공공건축,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이 있고, 토목사업에서는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임직원 현황

##### ① 임원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일 :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조남창	남	1959.1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조선대 건축공학과 (주)삼호	-	-	-	2009.01.01.~현재	2021.03.22

김원태	남	1962.12	전무	등기임원	상근	건축사업본부장	단국대 건축공학과 (주)상호	-	-	-	2012.01.01.~현재	2021.03.22
조동운	남	1962.0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사업본부장 수주영업	한양대 토목공학과 대림산업(주) ㈜상호	-	-	-	2016.01.01.~현재	-
유상만	남	1963.05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영업 건축기술건축 기전기술건축 건축공사관리	연세대 건축공학과 대림산업(주) (주)상호	-	-	-	2014.01.01.~현재	-
전택희	남	1962.09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사업 토목기술건축 안전보건	경희대 토목공학과 ㈜상호	-	-	-	2014.01.01.~ 현재	-
도승진	남	1966.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공사관리 고객만족 건축 PM	건국대 건축공학과 ㈜상호	-	-	-	2016.01.01.~현재	-
우현식	남	1966.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외주조달 준법경영	동국대 회계학 대림산업(주) ㈜상호	-	-	-	2018.06.05.~현재	-
정원찬	남	1966.05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도시정비사업 마케팅	대림대 경영정보학과 ㈜상호	-	-	-	2017.08.10.~현재	-
이상택	남	1964.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회계 재무	강원대 회계학과 ㈜상호	-	-	-	2017.08.10.~현재	-
김준호	남	1968.10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공사관리	고려대 토목공학과 (주)상호	-	-	-	2018.11.01.~현재	-
박유신	남	1972.10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 인사총무	서울대 건축학과 대림산업(주) (주)상호	-	-	-	2018.11.01.~현재	-
장근순	남	1971.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주택사업 개발사업	한양대 건축공학과 (주)상호	-	-	-	2019.12.01.~현재	-
신현창	남	1961.08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건국대 법학과 前 우리에프아이에스 상무 前 우리은행 본부장	-	-	-	2020.03.19.~현재	2023.03.19
신진기	남	1956.04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우리은행 본부장	-	-	-	2018.07.20.~현재	2021.03.18
이상수	남	1970.08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부산대 회계학 대림산업(주)	-	-	-	2019.03.21.~현재	2022.03.20
송규형	남	1966.05	전문임원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설계 기술연구	연세대 건축공학 (주)상호	-	-	-	2017.08.10.~현재	-

※ 상기 임원 현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재직 현황입니다.

②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성명	겸임현황			비고
	회사명	직책	선임시기	
이상수	고려개발(주)	기타비상무이사	2018.12	-
	청진이삼프로젝트(주)	기타비상무이사	2018.12	-
	송도파워(주)	대표이사	2018.12	-

※ 상기 겸직 현황은 당사의 등기임원이 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③ 미등기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성명	겸임현황			비고
	회사명	직책	선임시기	
조동윤	김해동서터널(주)	기타비상무이사	2016.06	-

※ 상기 겸직 현황은 당사의 미등기임원이 타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④직원 현황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건축사업	남	290	-	71	-	361	7.9	28,175	78	3,101	142	3,243	-
건축사업	여	9	-	2	-	11	7.5	511	46				-
토목사업	남	102	-	10	-	112	13.2	9,764	87				-
토목사업	여	2	-	0	-	2	3.5	72	36				-
경영지원	남	48	-	1	-	49	8.9	3,689	75				-
경영지원	여	8	-	0	-	8	4.8	476	60				-
합계		459	-	84	-	543	9.0	42,687	79				-

※ 상기 소속 외 근로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2019년 4월 30일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11,071,821	72.94	11,071,821	72.94	-
이해욱	임원	보통주	126,724	0.83	126,724	0.83	-
이준용	임원	보통주	13,347	0.09	13,347	0.09	-
이해서	친인척	보통주	1,188	0.01	1,188	0.01	※ 참조
(학)대림학원	계열사	보통주	118,056	0.78	118,056	0.78	-
계		보통주	11,331,136	74.65	11,331,136	74.65	-

	우선주	-	-	-	-	-
--	-----	---	---	---	---	---

※ 특수관계인 이해서의 '구분란 관계'는 대림그룹 동일인 이준용(명예회장)과의 관계입니다.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대림산업(주)	11,071,821	72.94%	-
	KB자산운용	776,917	5.12%	-
우리사주조합		-	-	-

※ 2019년말 기준 Credit Suisse Limited는 765,629주(지분율 5.04%)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 순처분 목적으로 장내매매를 통해 2020년 03월 17일 기준 보유주식수가 554,298주(지분율 3.65%)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03.2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참조)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4,436	99.74%	1,814,461	11.94%	-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7)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림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이고, 대림그룹은 2019년 당기말 현재 27개의 국내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내역과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 부여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등급 평가내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2.02.15.	기업어음 (CP)	B+	한국신용평가(주) (D ~ A1)	정기평정

※ 신용평가 회사에 따라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 ① 회사채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신용평가 전문기관 3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모두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회사채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 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 신용평가 회사에 따라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기업어음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중 A1에서 A3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은 신용평가 전문기관 3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모두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불능 상태임.

※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7년 12월 22일	해당사항 없음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3기 (2019.12월말)	제62기 (2018.12월말)	제61기 (2017.12월말)
[유동자산]	743,901	695,705	643,183
· 현금및현금성자산	313,954	330,192	330,68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4,228	176,841	138,740
· 재고자산	737	1,238	244
· 기타유동자산	254,982	187,434	173,516
[비유동자산]	107,819	100,388	128,60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155	22,179	39,678
· 유형자산	3,433	3,320	5,277
· 투자부동산	1,502	1,244	1,274
· 무형자산	2,681	2,023	1,594
· 기타비유동자산	60,048	71,622	80,785
<b>자산총계</b>	<b>851,720</b>	<b>796,093</b>	<b>771,791</b>
[유동부채]	357,570	309,868	239,733
[비유동부채]	36,307	118,604	209,488
<b>부채총계</b>	<b>393,877</b>	<b>428,472</b>	<b>449,221</b>
[자본금]	75,899	75,899	75,899
[기타불입자본]	36,305	36,305	36,305
[이익잉여금]	345,867	255,657	207,118
[기타자본구성요소]	(228)	(240)	3,248
<b>자본총계</b>	<b>457,843</b>	<b>367,621</b>	<b>322,570</b>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 2)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63기 (2019.01.01.~ 2019.12.31.)	제62기 (2018.01.01.~ 2018.12.31.)	제61기 (2017.01.01.~ 2017.12.31.)
매출액	1,279,913	965,572	858,627
영업이익	142,966	90,903	83,780
당기순이익	95,096	64,534	64,609
주당순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6,265원	4,251원	4,256원
기타포괄손익	(1,080)	(1,166)	(403)
총포괄손익	94,016	63,368	64,206

※ 최근 3사업년도중 중단사업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사업 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같은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63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li> <li>-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li> <li>-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정성</li> <li>-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li> <li>-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li> </ul>
제62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li> <li>-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li> <li>- 공사진행률 산정</li> <li>-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li> </ul>
제61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li> <li>-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및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li> <li>- 공사진행률 산정</li> <li>-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li> </ul>

## [피합병회사 : 고려개발 주식회사]

### 가. 회사의 개황

#### (1)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서규찬	남	1967년 02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도시정비사업	영지전문대 경영 前) 동부건설(주)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7.12~	-
유창식	남	1967년 03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집행, 토목지원, 토목기술	동아대학교 토목공학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7.12~	-
정주동	남	1967년 08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재경, 주택사업	영남대학교 경영학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7.12~	-
장진식	남	1965년 05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집행, 건축설계, 고객민족, 건축PM	원광대학교 건축공학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7.12~	-
한경우	남	1968년 01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사업, 토목투자사업	영지대학교 토목공학 前) 신우ENG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7.12~	-
이준형	남	1970년 05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 인사총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영지대학교 경영학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8.12~	-
김광덕	남	1968년 06월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사업	서울산업대 건축공학 한양대 건축관리학 석사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9.12~	-
김선근	남	1961년 06월	고문	미등기임원	상근	고문	한양대학교 지방공학 前) 삼성물산건설부문 前) 현대산업개발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8.03~	-
김상욱	남	1966년 08월	고문	미등기임원	상근	고문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前) 고려개발(주) 근무	-	-	-	2019.09~	-
이훈재	남	1966년 05월	고문	미등기임원	상근	수주영업	서울산업대 철도시스템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건설 박사 前) 쌍용건설 고려개발(주) 근무	-	-	-	2020.01~	-

※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변동된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담당업무	사유
신규선임	이훈재	남	1966년 05월	고문	수주영업	2020.01.01 선임
퇴임	이일규	남	1964년 08월	상무	건축사업본부	2020.01.31 퇴임
중임	김명철	남	1960년 05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2020.03.19 재선임

②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직책	성명	겸임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비고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수	대림산업(주)	담당임원	비상근	경영기획실 담당임원

③ 직원 현황

당사는 정규직 377명, 계약직 16명 등 총 39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등기 임원은 총 12명입니다.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95년이고, 연간 급여총액은 29,359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급여는 75백만원입니다.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합 계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토목본부	남	147	-	4	-	151	14.94	12,546	83	-
토목본부	여	2	-	-	-	2	14.8	154	77	-
건축본부	남	172	-	10	-	182	11.89	12,968	71	-
건축본부	여	5	-	-	-	5	9.71	280	56	-
경영지원 (CEO직속 포함)	남	47	-	2	-	49	11.34	3,284	67	-
경영지원 (CEO직속 포함)	여	4	-	-	-	4	8.85	127	32	-
합 계		377	-	16	-	393	12.95	29,359	75	-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13,413,000	44.07%	6,706,500	44.07%	-
(학)대림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54,680	0.18%	27,340	0.18%	-
㈜캠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1,156,583	3.80%	578,291	3.80%	-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우선주	5,555,550	100.00%	2,777,775	100.00%	2017.02.28 최대주주 대림산업(주) 5,555,550주 제3차배정 유상증자 참여
계		보통주	14,624,263	48.05%	7,312,131	48.05%	2019년 8월 26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2:1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주	5,555,550	100.00%	2,777,775	100.00%	2019년 8월 26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2:1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대림산업(주)	6,706,500	44.07%	보통주
	채권금융기관	4,444,441	29.20%	보통주
우리사주조합		187	0.00%	보통주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19년 8월 26일 2:1 무상감자로 인해 변동 되었습니다.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3,806	99.66%	3,554,619	23.35%	보통주
------	-------	--------	-----------	--------	-----

주)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7)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립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이고, 대립그룹은 2019년 당기말 현재 27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 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1.01.04	기업어음	A2-	한국신용평가(A1 ~ D)	정기평가
2011.02.23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 ~ D)	본평가
2011.06.08	회사채	A-	한신정평가(AAA ~ D)	본평가
2011.06.08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AAA ~ D)	본평가
2011.06.08	기업어음	A2-	한신정평가(A1 ~ D)	정기평가
2011.06.08	기업어음	A2-	한국신용평가(A1 ~ D)	정기평가
2011.10.12	회사채	BBB+	나이스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0.12	회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0.12	기업어음	A3+	나이스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0.12	기업어음	A3+	나이스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0.12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1.14	회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1.14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1.30	회사채	BB+	한국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1.30	기업어음	B+	한국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2.01	회사채	CCC	나이스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2.01	기업어음	C	나이스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1.12.12	회사채	CCC	한국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1.12.12	기업어음	C	한국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2.03.21	기업신용등급	BB+	나이스신용평가(AAA ~ D)	수시평가
2012.03.21	기업어음	B+	나이스신용평가(A1 ~ D)	수시평가
2012.03.21	회사채	CCC	나이스신용평가(AAA ~ D)	정기평가
2013.06.19	회사채	CCC	나이스신용평가(AAA ~ D)	정기평가

※ 2019. 06. 14. (주)나이스디앤비로부터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를 부여 받음

(2)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 체계

① 기업어음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중 A1에서 A3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상태임.

※ 당해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② 회사채 및 기업신용등급

회사채 및 기업신용등급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회사채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 불능상태임.

※ 당해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8년 10월 30일	-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55기 (2019.12.31)	제54기 (2018.12.31)	제53기 (2017.12.31)
[유동자산]	411,071	356,479	398,201
· 현금및현금성자산	71,043	92,832	75,380
· 단기금융자산	-	76	7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9,305	83,977	81,487
· 미청구공사	196,278	93,005	155,440
· 재고자산	46,938	51,124	51,937
· 기타금융자산	1,307	998	9,825
· 기타유동자산	26,201	34,466	24,056
[비유동자산]	202,352	236,472	264,477
· 장기금융상품	13	13	1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8,269	38,290
· 투자자산	65,111	77,404	102,561
· 투자부동산	6,955	7,106	15,967
· 유형자산	1,055	3,370	3,434
· 무형자산	3,956	3,961	3,827
· 사용권자산	3,508	-	-
· 이연법인세자산	46,511	56,033	54,549
· 기타금융자산	75,243	50,316	45,835
자산총계	613,423	592,951	662,678
[유동부채]	267,121	419,431	243,769
[비유동부채]	177,259	37,379	340,691
부채총계	444,381	456,810	584,460
[자본금]	89,986	179,972	135,528
[기타불입자본]	89,919	23,177	22,028
[이익잉여금(결손금)]	(10,860)	(67,000)	(83,871)
[기타자본구성요소]	(3)	(9)	4,533

자본총계	169,042	136,141	78,218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 2)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과 목	제55기 (2019.01.01~2019.12.31)	제54기 (2018.01.01~2018.12.31)	제53기 (2017.01.01~2017.12.31)
매출액	684,940	554,057	663,099
영업손익	63,108	39,963	56,301
당기순손익	34,328	622	5,723

##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19년	삼정회계법인	적정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9년 12월 31일 및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삼정회계법인	적정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정회계법인	적정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합병의 형태

### 가. 합병 방법

주식회사 삼호가 고려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삼호는 존속하고, 고려개발주식회사는 해산합니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대림건설주식회사(가칭)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 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삼호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보통주 1,761주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4. 진행경과 및 일정

### 가.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20년 02월 27일 ~ 2020년 03월 26일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2020년 03월 27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20년 03월 27일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구분	주식회사 상호 (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3월 27일
합병계약일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3월 27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3월 27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0년 04월 13일	2020년 04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4월 28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04월 28일
	종료일	2020년 05월 12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년 05월 13일	2020년 05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3일
	종료일	2020년 06월 02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20일
	종료일	2020년 06월 22일
합병기일	2020년 07월 01일	2020년 07월 01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같음 이사회 결의일	2020년 07월 0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0년 07월 02일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0년 07월 02일	2020년 07월 02일
합병신주 교부일	-	-
합병신주상장 예정일	2020년 07월 21일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2019년 0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의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상호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0년 06월 0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고려개발주식회사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0년 06월 0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5. 합병의 성사 조건

###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 제 14 조 (해 제)

-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존속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ii)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부담하지 아니한다.
- (5)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제 16조 (개정, 보충 및 수정)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이 적법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하여만 개정,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나.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주식회사 삼호 또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와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 시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우선주 종류주주총회는 요구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주식회사 삼호가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합병신주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그 우선주는 고려개발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및 조건을 기초로 하되 보통주 합병비율 적용에 따른 가치 변동분을 감안하여 1주당 우선배당률 및 상환가액을 변경하였는바(합병신주인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참조), 고려개발주식회사 우선주의 주주는 본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에 의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본 합병이나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삼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본건의 경우, 2020년 0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04월 0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 1. 합병의 합병가액 · 비율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와의 본 합병은 양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가.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피합병법인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보통주 15,219,444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당 주식회사 삼호의 0.4516274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주식회사 삼호 (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 (피합병회사)
기준시가	12,078원	5,455원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합병가액(1주당)	12,078원	5,455원
합병비율	1	0.4516274

(주1)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와 피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는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주식회사 삼호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0원) 0.4516274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나. 상환전환우선주 기준 합병비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피합병법인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2,777,775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당 주식회사 삼호의 0.4516274주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주식회사 삼호 (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 (피합병회사)
기준시가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합병가액(1주당)	-	-
합병비율	1	0.4516274

(주1) 합병회사는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않아 우선주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2) 피합병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또한 상장되어 있지 않아, 비상장주식인 우선주의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출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할 우선주만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2. 우선배당의 내용: 1주당 1,196원(누적적, 비참가적 조건)

- 이익배당의 권리가 있는 우선주의 관점에서 우선주 전체에 대한 총 이익배당액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합병비율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존 액면가액의 연 10.8%로 규정된 우선배당률에 합병비율인 0.4516274를 나누었고 이를 액면가액인 5,000원과 곱하여 1주당 1,196원의 우선배당 권리 조건을 산출하였습니다.

3.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상환기간 시작일의 도래

※ 발행회사는 상환일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상환의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됨

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상환방법

- 상환규모: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상환재원 : 현금 또는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

상환기간: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주당 상환가액: 금 39,856원

- 잠재적 상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 전체에 대한 총 상환가액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합병비율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존 18,000원으로 규정된 주당 상환가액에 합병비율인 0.4516274를 나누어 1주당 39,856원의 상환가액 권리 조건을 산출하였습니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 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전환청구기간: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라. 본건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발행하는 신주 중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기산점은 본건 합병 전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우선배당 기산점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마.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2. 산출근거

### 가. 보통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의 양 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1)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0년 03월 2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03월 2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 03월 26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기산일: 2020년 03월 26일)]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20년 02월 27일부터 2020 03월 26일까지	12,900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20년 03월 20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11,585
최근일 종가(C)	2020년 03월 26일	11,750
산술평균가액[D=(A+B+C)/3]	-	12,078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12,078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0년 03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 × 거래량
2020-03-26	11,750	65,156	765,583,000
2020-03-25	11,900	44,754	532,572,600

2020-03-24	11,100	92,735	1,029,358,500
2020-03-23	11,650	48,608	566,283,200
2020-03-20	12,000	40,762	489,144,000
2020-03-19	11,400	197,040	2,246,256,000
2020-03-18	12,800	109,703	1,404,198,400
2020-03-17	14,200	238,997	3,393,757,400
2020-03-16	14,200	18,080	256,736,000
2020-03-13	14,500	35,781	518,824,500
2020-03-12	15,150	23,453	355,312,950
2020-03-11	16,000	8,972	143,552,000
2020-03-10	16,700	13,432	224,314,400
2020-03-09	16,300	15,252	248,607,600
2020-03-06	16,400	2,651	43,476,400
2020-03-05	17,050	9,507	162,094,350
2020-03-04	16,650	3,567	59,390,550
2020-03-03	16,300	4,421	72,062,300
2020-03-02	15,700	3,130	49,141,000
2020-02-28	15,650	6,822	106,764,300
2020-02-27	16,250	3,329	54,096,250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2,900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1,585
최근일 종가(원)			11,750

(2)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0년 03월 2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03월 27일)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 03월 26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2020년 03월 26일)]

구분	기간	금액(원)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20년 02월 27일부터 2020 03월 26일까지	5,735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20년 03월 20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5,009
최근일 종가(C)	2020년 03월 26일	5,620
산술평균가액[D=(A+B+C)/3]	-	5,455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5,455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0년 03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 × 거래량
2020-03-26	5,620	51,586	289,913,320
2020-03-25	4,940	41,013	202,604,220
2020-03-24	4,425	25,375	112,284,375
2020-03-23	4,400	13,697	60,266,800
2020-03-20	4,765	22,399	106,731,235
2020-03-19	4,610	15,594	71,888,340
2020-03-18	5,200	3,576	18,595,200
2020-03-17	5,650	3,254	18,385,100
2020-03-16	5,670	1,297	7,353,990
2020-03-13	5,510	9,795	53,970,450
2020-03-12	6,080	8,012	48,712,960
2020-03-11	6,350	11,082	70,370,700
2020-03-10	6,650	7,319	48,671,350
2020-03-09	6,790	7,840	53,233,600
2020-03-06	6,970	15,717	109,547,490
2020-03-05	7,220	13,393	96,697,460
2020-03-04	7,230	2,418	17,482,140
2020-03-03	7,210	8,351	60,210,710
2020-03-02	7,200	8,334	60,004,800
2020-02-28	7,180	10,299	73,946,820
2020-02-27	7,540	14,976	112,919,040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5,735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5,009
최근일 종가(원)			5,620

#### 나. 우선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에게 발행할 예정인 주식회사 삼호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합병의 당사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우선주가 발행 및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

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 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Ⅲ. 합병의 요령

#### 1. 신주의 배정

##### 가. 신주배정내용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는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451627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발행예정 총 합병신주 보통주 6,873,518주)를 발행하고,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상환전환우선주주에 대하여 고려개발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주식회사 삼호 상환전환우선주식(액면금액 5,000원) 0.4516274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발행예정 총 합병 신주 상환전환우선주 1,254,520주)를 발행합니다.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대상: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 (합병기일)

한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p>1.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p> <p>2. 우선배당의 내용: 1주당 1,196원(누적적, 비참가적 조건)</p> <p>- 이익배당의 권리가 있는 우선주의 관점에서 우선주 전체에 대한 총 이익배당액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합병비율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존 액면가액의 연 10.8%로 규정된 우선배당률에 합병비율인 0.4516274를 나누었고 이를 액면가액인 5,000원과 곱하여 1주당 1,196원의 우선배당 권리 조건을 산출하였습니다.</p> <p>3. 상환에 관한 사항:</p> <p>상환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li><li>-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상환기간 시작일의 도래</li></ul> <p>※ 발행회사는 상환일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상환의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p> <p>※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됨</p> <p>가.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p> <p>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p> <p>상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환규모: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li><li>- 상환재원 : 현금 또는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li></ul>
--

상환기간: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주당 상환가액: 금 39,856원

- 잠재적 상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 전체에 대한 총 상환가액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합병 비율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존 18,000원으로 규정된 주당 상환가액에 합병비율 인 0.4516274를 나누어 1주당 39,856원의 상환가액 권리 조건을 산출하였습니다.

#### 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 비율 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전환청구기간: 2022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를 발행함

###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 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권해석 상 배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본 사안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회사의 자산유출이 없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실무상으로도 피합병회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서 합병신주를 배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병당사회사인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

식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5,74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일(2020년 05월 1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2020년 06월 02일 예정)의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대비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 입장에서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기주식이라는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합병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합병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는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자기주식(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761주) 및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보통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보통주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보통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삼호 주식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0년 07월 21일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상환전환우선주 외의 기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주식회사 삼호의 0.4516274주의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는 이전과 같은 조건을 가지며, 현재까지 상장 계획은 없습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0년 07월 21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본건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발행하는 신주 중 보통주식에 대한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에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기산점은 본건합병 전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우선배당 기산점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2. 교부금 등 지급

주식회사 삼호가 고려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발행과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주식회사 삼호가 고려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 직·간접적인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자문수수료	510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상장수수료	15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식회사 삼호 증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797억원 (주가 11,750원 가정 / 2020년 3월 26일 증가) - 수수료율 : 시가총액 기준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47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만원
기타 비용	60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합계	585	-

주)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종류	보통주	우선주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	자기주식	371	-
	피합병회사발행주식	-	-
피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	자기주식	1,761	-
	합병회사발행주식	-	-

## 나.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보유한 자기주식 371주는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자기주식(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761주) 및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보통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보통주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는 주식회사 삼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존 합병당사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및 단주 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리방침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는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주식회사 삼호의 종업원으로 승계합니다.

##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주식회사 삼호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에게 주식회사 삼호의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1 : 0.4516274의 합병비율(보통주 합병비율과 동일함)로 배정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삼호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는 고려개발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및 조건을 기초로 하되, 보통주 합병비율 적용에 따른 가치 변동분을 감안하여 1주당 우선배당률 및 상환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합병신주인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V. 신주의 주요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참조).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의 신규상장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8. 채권자 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0년 5월 20일

(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3) 공고매체

- 주식회사 삼호 : www.samho.co.kr

- 고려개발주식회사 : www.kdc.co.kr

(4) 이의 제출처

- 주식회사 삼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5층 (주)삼호

- 고려개발주식회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Tower 고려개발주식회사 안양지점 18층 재경팀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승계합니다.

##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 제 14 조 (해 제)

-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존속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ii)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부담하지 아니한다.
- (5)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7)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제 16조 (개정, 보충 및 수정)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이 적법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하여만 개정,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나. 합병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본 합병 전의 주식회사 삼호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주식회사 삼

호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해산 등기일 이전에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본건 합병으로 주식회사 삼호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2020년 05월 13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추가 신규 선임 이사 및 감사]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곽수윤	1968년 08월	사내이사/전무	등기임원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건축학</li> <li>· 前) 대림산업(주) 상무</li> <li>· 고려개발(주) 대표이사</li> </ul>
김명철	1960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li> <li>· 前) 국민은행 전문자문위원</li> <li>· 前) (주)일신테크놀로지 부사장</li> <li>· 에이치앤케이투자(주) 근무</li> </ul>

향후 합병회사는 기존 주식회사 삼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 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계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 등기일 (2020년 07월 02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며, 2020년 05월 13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식회사 상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제1조 (상호)	제1호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상호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SAMHO INTERNATIONAL CO., LTD.라 표기한다.	제1호 (상호) 이 회사는 대림건설 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Daelim Construction Co.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11. (생략) 12. 양회가공, 제재, 건설자재제조 및 판매업 13. ~ 76. (생략) (신설) 77. 위의각호에부대되는사업일체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11. (현행과 같음) 12. 양회가공, 제재, 건설자재 제조, 판매 및 임대업 13. ~ 76. (현행과 같음) 77.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폐기물처리시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오수처리장, 정화조 및 축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및 소방설비 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78.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79. 부동산개발, 산업공장시설, 일반토목, 건축, 수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의 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측량, 조달, 감리, 컨설팅, 공사관리 등 일체의 시행 및 기술용역업 80. 무역, 군납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중기대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81. 포장용 아스콘, 투수콘 및 상온합제 제조판매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82. 고속도로 휴게업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 83. 오락,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84. 엔지니어링 및 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 85. 에너지관리 진단업, 시설물의 안전진단업 86.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87. 종합감리전문업 88. 물류창고(센터)업 89. 지하수 개발·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90. 공중목욕탕, 수영장, 고급사우나업 91. 스파 서비스업 92. 음식점업 93. 음, 식료 제조 판매업 94. 체육시설 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95. 각호에 관련된 위탁운영업 96. 각호에 관련된 종합 소매업 97. 각호에 관련된 스포츠 서비스업 98. 위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p>제4조 (광고방법)</p>	<p>제 4 조 (광고방법)</p> <p>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samho.co.kr">http://www.samho.co.kr</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p>	<p>제 4 조 (광고방법)</p> <p>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daelimcon.co.kr">http://www.daelimcon.co.kr</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 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p>
<p>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p>	<p>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생략)</p> <p>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1% 이상 12%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 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p> <p>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 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 당한다.</p> <p>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 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배 당하지 아니한다.</p> <p>⑤ (생략)</p>	<p>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좌동)</p> <p>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 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다만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종류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 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하지 않는다.</p> <p>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 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 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⑤ (좌동)</p>

<p>제 8 조의 2 (상환주식)</p>	<p>제 8 조의 2 (상환주식)</p> <p>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lt;발행가액+가산금액&gt;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p> <p>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p> <p>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p> <p>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p> <p>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 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제8조의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식)</p> <p>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 또는 일정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상환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p> <p>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p> <p>가.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p> <p>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p> <p>3.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의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4. 이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상환우선주식을 강제상환한다.</p> <p>② 이 회사는 본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가액은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p> <p>2.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상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p> <p>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p> <p>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
------------------------	--	---

		<p>③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다.</p> <p>④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를 통해 그 상환우선주식을 제8조의3에서 정한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	--	--

<p>제 8 조의 3 (전환우선주식)</p>	<p>제 8 조의 3 (전환우선주식)</p> <p>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이하 "전환우선주식"이라 함)을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 익월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의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우선주식)</p> <p>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p> <p>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p> <p>3. 이 회사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환기간 내에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가. 제3세력에 의한 적대적 M&amp;A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나.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우선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다.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1년 평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p> <p>4. 이 회사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전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전환우선주식을 강제전환한다.</p> <p>②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p> <p>1.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및 수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p> <p>2.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전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전환청구기간"으로 본다.</p> <p>3. 주주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이 회사는 전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전환우선주식을 제8조의 2에서 정한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기준을 준용한다.</p>
--------------------------	--	--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 기산일)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62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 간의 2020년 3월 27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 정관 제31조 및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 간의 2020년 3월 27일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또는 감사를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3. (합병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이 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 간의 2020년 3월 27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합병신주 중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합병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기산점은 위 합병 전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우선배당 기산점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0년 07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바. 일부 무효

본건의 합병계약에서 어느 규정이 무효나 집행 불능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은 무효로 되지 아니합니다.

## 사.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관한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아.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에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합니다.

#### 자.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I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1)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

- 액면금액 : 5,000원
- 발행신주 : 6,873,518주

(2) 주식회사 삼호 상환전환우선주

- 액면금액 : 5,000원
- 발행신주 : 1,254,520주

####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보통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등 회사 채권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한다.

####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이익의 배당)**

- 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본 합병 이후 변경 예정(주주총회(2020년 05월 13일) 결의 예정)인 주식회사 삼호의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의 권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 (2) 우선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식회사 삼호 우선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우선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삼호 우선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0.1% 이상 12%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배당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의 2 (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 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 8 조의 3 (전환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이하 "전환우선주

식"이라 함)을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 익월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합병 이후 변경 예정(주주총회(2020년 05월 13일) 결의 예정)인 주식회사 삼호의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삼호 우선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좌동)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다만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종류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하지 않는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좌동)

### 제8조의2(주식의 상환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 또는 일정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상환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의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이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상환우선주식을 강제상환한다.

② 이 회사는 본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가액은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주주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상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상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발행시이사회결의를통해그상환우선주식을제8조의3에서정한“전환우선주식”으로발행할수있다.

### 제8조의3 (주식의 전환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 전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1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3. 이 회사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본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환기간 내에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제3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나.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우선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다. 전환우선주식이 상장된 경우 1년 평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4. 이 회사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전환일이 만료된 때에는 전환우선주식을 강제전환한다.

② 이 회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및 수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기간은 본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2호의 “전환기간”을 본항에서는 “전환청구기간”으로 본다.

3. 주주가 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의 뜻 및 전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전환일 2주간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전환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전환우선주식을 제8조의 2에서 정한 “상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기준을 준용한다.

### (3)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본건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발행하는 신주 중 보통주식에 대한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의 기산점은 본건 합병 전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될 당시의 우선배당 기산점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4)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삼호 주식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0년 07월 21일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상환전환우선주 외의 기타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예정) 현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주식회사 삼호의 0.4516274주의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상환전환우선주)는 이전과 같은 조건을 가지며, 현재까지 상장 계획은 없습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0년 07월 21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 (1) 교부대상

합병기일(2020년 07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 주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 (2) 교부비율

- 고려개발주식회사의 보통주 1주당 0.4516274의 비율로 하여 주식회사 삼호의 보통주를 발행
-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0.4516274의 비율로 하여 주식회사 삼호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 (3)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삼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 관련 법령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 (4) 교부금 지급

주식회사 삼호가 고려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발행과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V.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보통주 : 12,688원	보통주 : 5,749원

### 가. 주식회사 삼호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2,688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03월 26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3,579원	2020년 01월 28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2,900원	2020년 02월 27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1,585원	2020년 03월 20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12,688원	-

#### (2) 산출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	-------	--------	--------

2020-03-26	11,750	65,156	765,583,000
2020-03-25	11,900	44,754	532,572,600
2020-03-24	11,100	92,735	1,029,358,500
2020-03-23	11,650	48,608	566,283,200
2020-03-20	12,000	40,762	489,144,000
2020-03-19	11,400	197,040	2,246,256,000
2020-03-18	12,800	109,703	1,404,198,400
2020-03-17	14,200	238,997	3,393,757,400
2020-03-16	14,200	18,080	256,736,000
2020-03-13	14,500	35,781	518,824,500
2020-03-12	15,150	23,453	355,312,950
2020-03-11	16,000	8,972	143,552,000
2020-03-10	16,700	13,432	224,314,400
2020-03-09	16,300	15,252	248,607,600
2020-03-06	16,400	2,651	43,476,400
2020-03-05	17,050	9,507	162,094,350
2020-03-04	16,650	3,567	59,390,550
2020-03-03	16,300	4,421	72,062,300
2020-03-02	15,700	3,130	49,141,000
2020-02-28	15,650	6,822	106,764,300
2020-02-27	16,250	3,329	54,096,250
2020-02-26	16,450	5,622	92,481,900
2020-02-25	16,550	3,325	55,028,750
2020-02-24	16,300	8,571	139,707,300
2020-02-21	16,400	18,344	300,841,600
2020-02-20	16,600	3,469	57,585,400
2020-02-19	16,800	7,084	119,011,200
2020-02-18	17,050	55,159	940,460,950
2020-02-17	17,500	5,082	88,935,000
2020-02-14	17,700	2,378	42,090,600
2020-02-13	17,850	1,583	28,256,550
2020-02-12	18,050	4,804	86,712,200
2020-02-11	17,850	6,321	112,829,850
2020-02-10	18,450	1,061	19,575,450
2020-02-07	18,450	694	12,804,300
2020-02-06	18,800	3,872	72,793,600
2020-02-05	17,950	2,841	50,995,950
2020-02-04	18,250	8,401	153,318,250
2020-02-03	17,550	3,625	63,618,750

2020-01-31	17,700	21,823	386,267,100
2020-01-30	19,250	5,245	100,966,250
2020-01-29	19,250	2,166	41,695,500
2020-01-28	19,000	5,906	112,214,00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3,579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12,900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11,585

자료 : 한국거래소

## 나. 고려개발주식회사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749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03월 26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6,501원	2020년 01월 28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735원	2020년 02월 27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009원	2020년 03월 20일부터 2020년 03월 26일까지
기준매수가격 [(①+②+③)/3]	5,749원	-

### (2) 산출내역

일자	증가(원)	거래량(주)	증가×거래량
2020-03-26	5,620	51,586	289,913,320
2020-03-25	4,940	41,013	202,604,220
2020-03-24	4,425	25,375	112,284,375
2020-03-23	4,400	13,697	60,266,800

2020-03-20	4,765	22,399	106,731,235
2020-03-19	4,610	15,594	71,888,340
2020-03-18	5,200	3,576	18,595,200
2020-03-17	5,650	3,254	18,385,100
2020-03-16	5,670	1,297	7,353,990
2020-03-13	5,510	9,795	53,970,450
2020-03-12	6,080	8,012	48,712,960
2020-03-11	6,350	11,082	70,370,700
2020-03-10	6,650	7,319	48,671,350
2020-03-09	6,790	7,840	53,233,600
2020-03-06	6,970	15,717	109,547,490
2020-03-05	7,220	13,393	96,697,460
2020-03-04	7,230	2,418	17,482,140
2020-03-03	7,210	8,351	60,210,710
2020-03-02	7,200	8,334	60,004,800
2020-02-28	7,180	10,299	73,946,820
2020-02-27	7,540	14,976	112,919,040
2020-02-26	7,820	1,909	14,928,380
2020-02-25	7,900	6,122	48,363,800
2020-02-24	7,780	6,215	48,352,700
2020-02-21	8,140	2,130	17,338,200
2020-02-20	8,230	514	4,230,220
2020-02-19	8,320	15,791	131,381,120
2020-02-18	8,190	1,667	13,652,730
2020-02-17	8,280	1,917	15,872,760
2020-02-14	8,250	3,629	29,939,250
2020-02-13	8,300	6,975	57,892,500
2020-02-12	8,280	4,752	39,346,560
2020-02-11	8,360	1,563	13,066,680
2020-02-10	8,240	5,880	48,451,200
2020-02-07	8,390	3,562	29,885,180
2020-02-06	8,490	5,616	47,679,840
2020-02-05	8,520	8,008	68,228,160
2020-02-04	8,390	6,728	56,447,920
2020-02-03	8,290	13,572	112,511,880
2020-01-31	8,290	8,445	70,009,050
2020-01-30	8,200	7,097	58,195,400
2020-01-29	8,370	3,226	27,001,620
2020-01-28	8,390	12,231	102,618,090

2개월 가중평균증가(원)	6,501
1개월 가중평균증가(원)	5,735
1주일 가중평균증가(원)	5,009

자료 : 한국거래소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0년 03월 27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0년 03월 30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0년 05월 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0년 05월 11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0년 05월 2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다. 접수 장소

구분	장소	비고
----	----	----

주식회사 상호 (합병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5층 (주)삼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고려개발주식회사 (피합병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Tower 고려개발주식회사 안양지점 18층 재경팀	

## 라. 청구기간

구 분		일 자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20년 04월 28일
	종료일	2020년 05월 12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0년 05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05월 13일
	종료일	2020년 06월 02일

## 4.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i) 주식회사 삼호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주식회사 삼호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ii)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매수하여야 할 주식수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회사 삼호 또는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삼호 또는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삼호 또는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발행하고,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바, 이러한 주식 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삼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0년 03월 30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VI.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

생하여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V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 1. 당사회사간의 관계

####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와 피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집단인 대림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 나. 임원의 상호겸직

(1)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의 임원 상호겸직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 사업보고서

(2)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등기 임원 상호겸직 현황

직책	성명	겸임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비고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수	대림산업(주)	담당임원	비상근	경영기획실 담당임원

자료 : 사업보고서

####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는 대림그룹에 속해있는 계열회사인 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동 특수관계인들의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회사 : 주식회사 삼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11,071,821	72.94	-
이해욱	임원	보통주	126,724	0.83	-
이준용	임원	보통주	13,347	0.09	-
이해서	친인척	보통주	1,188	0.01	주2
(학)대림학원	계열사	보통주	118,056	0.78	-
계		보통주	11,331,136	74.65	-
		우선주	-	-	-

주1)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5,179,766주 기준입니다.  
 주2) 특수관계인 이해서의 '구분란 관계'는 대림그룹 동일인 이준용(명예회장)과의 관계입니다.

(2) 피합병회사 : 고려개발주식회사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6,706,500	44.07	-
(학)대림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27,340	0.18	-
(주)캠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578,291	3.80	-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본인	우선주	2,777,775	100.00	2017.02.28 최대주주 대림산업(주) 5,555,550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계		보통주	7,312,131	48.05	2019년 8월 26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2:1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주	2,777,775	100.00	2019년 8월 26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2:1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5,219,444주, 우선주 2,777,775주 기준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와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시장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통합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양사 구매선 통합 및 자재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형 확대에 따른 대형 시공사의 사업영역 및 신규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증가, 사업포트폴리오 안정화 및 각사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하여 국내 대표 건설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매출거래, 채권·채무 등

(기간 : 2019.01.01. ~ 2019.12.31)

(단위: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매출 등	매입 등	채권잔액 등	채무잔액 등	중단사업비용 등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34	7,641	2	408	-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주식회사 삼호와 주식회사고려개발의 대주주는 대림산업(주)입니다. 합병양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

1) 장기차입금(대여금) 제공받은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제공 받은 담보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담보 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5) 증권의 거래 내역

성명 (법인명)	관계	증권 거래내역				비고
		발행인	발행가	거래주식수	거래 후 주식수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주)삼호	10,000원	5,000,000주	6,346,821주	-

※ 상기 증권의 거래는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4일 채권금융기관 및 최대주주의 참여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등)로 인해 최대주주인 대림산업(주)가 배정받은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17년 7월 7일 대림산업(주)는 당사의 주식을 추가로 장외매입하여, 현재 대림산업(주)가 소유한 당사 주식수 및 지분율은 11,071,821주, 72.94%로 증가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7.07.07>

(2) 고려개발주식회사

1) 장기차입금(대여금) 제공받은 내역

(기준일 : 2019.12.31)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변동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계열회사	장기차입금	38,100	-	(38,100)	-	상환

2) 제공 받은 담보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담보 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양사의 최대주주인 대림산업(주)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삼호

(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대상물	거래금액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영업활동	공사 용역 등 매출/매입 거래	149,587

(2) 고려개발주식회사

(기간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대상물	거래금액
대림산업(주)	최대주주	영업활동	공사 용역 등 매출/매입 거래	148,703

## VII.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1. 과거 합병 등 내용

#### 가. 주식회사 삼호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최근 3년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기타 대규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내역은 없습니다.

#### 나.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최근 3년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기타 대규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내역은 없습니다.

### 2. 대주주 지분 현황 등

#### 가. 합병 전·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합병 전·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식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대림산업(주)	보통주	11,071,821	72.94%	6,706,500	44.07%	14,100,660	63.94%
이해욱	보통주	126,724	0.83%	0	0.00%	126,724	0.57%
이준용	보통주	13,347	0.09%	0	0.00%	13,347	0.06%
이해서	보통주	1,188	0.01%	0	0.00%	1,188	0.01%
(학)대림학원	보통주	118,056	0.78%	27,340	0.18%	130,403	0.59%
(주)캠텍	보통주	0	0.00%	578,291	3.80%	261,172	1.18%
대림산업(주)	우선주	-	-	2,777,775	100.00%	1,254,520	100.00%
합계	보통주	11,331,136	74.65%	7,312,131	48.05%	14,633,494	66.36%
	우선주	-	-	2,777,775	100.00%	1,254,520	100.00%

주1) 합병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내역은 합병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에 따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삼호	고려개발		삼호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수권주식수	200,000,000	100,000,000		200,000,000	
발행주식수	15,179,766	15,219,444	2,777,775	22,053,284	1,254,520
자본금	75,898,830,000	89,986,095,000		116,539,020,000	

주1) 합병 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 후 자본현황은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고려개발의 자기주식(주식매수청구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포함)에 합병신주(보통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고려개발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규모에 따라 합병 신주 주식수(보통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발행주식수는 합병 신주 배정과정에서 단수주 발생이 없고, 주식매수청구 행사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 합병 전의 주식회사 삼호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주식회사 삼호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본건 합병으로 주식회사 삼호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2020년 05월 13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추가 신규 선임 이사 및 감사]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주요경력
곽수윤	1968년 08월	사내이사/전무	등기임원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건축학</li> <li>前) 대림산업(주) 상무</li> <li>고려개발(주) 대표이사</li> </ul>
김명철	1960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li> <li>前) 국민은행 전문자문위원</li> <li>前) (주)일신테크놀로지 부사장</li> <li>에이치앤케이투자(주) 근무</li> </ul>

향후 합병회사는 기존 주식회사 삼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 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계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 등기일 (2020년 07월 02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5. 사업계획 등

주식회사 삼호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	피합병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	합병후
자산			
유동자산	743,900,738,228	411,070,919,142	1,154,971,657,370
현금및현금성자산	313,954,016,255	71,042,657,881	384,996,674,136
단기금융상품	19,544,726,332	-	19,544,726,3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4,228,271,171	69,305,151,254	243,533,422,425
재고자산	736,812,795	46,937,567,093	47,674,379,888
미청구공사	184,743,661,419	196,277,552,240	381,021,213,6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5,449,571,869	-	35,449,571,8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55,400,923		855,400,923
기타금융자산	0	1,306,941,860	1,306,941,860

기타유동자산	14,112,444,820	26,201,048,814	40,313,493,63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75,832,644	0	275,832,644
비유동자산	107,819,168,401	202,352,245,859	310,171,414,260
장기금융상품	15,000,000	13,000,000	28,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154,209,692	-	40,154,209,6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495,243,233	59,628,330,709	87,123,573,9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44,205,619	127,691,774	2,071,897,393
공동기업투자주식	-	5,355,334,000	5,355,334,000
투자부동산	1,502,465,966	6,955,406,057	8,457,872,023
유형자산	3,433,155,708	1,054,551,486	4,487,707,194
무형자산	2,681,346,318	3,956,313,930	6,637,660,248
사용권자산	5,020,859,838	3,508,011,149	8,528,870,987
이연법인세자산	23,665,721,255	46,510,558,262	70,176,279,517
기타비유동자산	1,906,960,772	-	1,906,960,772
기타금융자산	-	75,243,048,492	75,243,048,492
자산총계	851,719,906,629	613,423,165,001	1,465,143,071,630
부채			
유동부채	357,569,806,807	267,121,465,231	624,691,272,03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5,149,341,060	186,948,730,788	362,098,071,848
초과청구공사	101,310,404,113	2,613,086,034	103,923,490,147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31,525,310	18,943,534,960	18,975,060,270
당기법인세부채	17,109,699,535	1,840,870,114	18,950,569,649
총당부채	9,494,792,910	27,387,446,778	36,882,239,688
금융보증부채	16,161,210,726	335,889,631	16,497,100,357
기타금융부채	0	956,000,172	956,000,172
리스부채	4,378,603,173	2,499,687,050	6,878,290,223
기타유동부채	33,934,229,980	25,596,219,704	59,530,449,684
비유동부채	36,307,487,497	177,259,380,656	213,566,868,15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차입금및사채	649,660,023	140,933,851,896	141,583,511,919
순확정급여부채	2,722,435,749	10,400,306,035	13,122,741,784
하자보수총당부채	23,470,794,065	13,808,352,969	37,279,147,034
금융보증부채	491,814,128	10,827,493,840	11,319,307,968
리스부채	632,610,701	1,043,875,916	1,676,486,617
기타총당부채	7,619,689,058	0	7,619,689,058
기타비유동부채	720,483,773	245,500,000	965,983,773
부채총계	393,877,294,304	444,380,845,887	838,258,140,191
자본			
자본금	75,898,830,000	89,986,095,000	165,884,925,000
기타불입자본	36,305,423,272	89,918,956,680	126,224,379,952
기타자본구성요소	-228,667,134	-2,974,316	-231,641,450
이익잉여금	345,867,026,187	-10,859,758,250	335,007,267,937
자본총계	457,842,612,325	169,042,319,114	626,884,931,439
자본과부채총계	851,719,906,629	613,423,165,001	1,465,143,071,630

주1) 주식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재무상태표는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후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양사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7. 그 밖에 투자이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① 합병계약서
-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식회사 삼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삼호는 투자설명서를 주식회사 삼호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식회사 삼호의 주주와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04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식회사 삼호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13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식회사 삼호의 본점 및 사무소, 고려개발주식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식회사 삼호 및 고려개발주식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 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④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삼호】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3 기 2019. 12. 31 현재

제 62 기 2018.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3기	제 62 기
자산		
유동자산	743,900,738,228	695,705,593,576
현금및현금성자산	313,954,016,255	330,192,224,453
단기금융상품	19,544,726,332	13,848,316,63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4,228,271,171	176,840,965,887
매도가능금융상품	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55,400,923	593,014,4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	35,449,571,869	0
미청구공사미수	184,743,661,419	154,683,423,286
재고자산	736,812,795	1,238,343,087
기타유동자산	14,112,444,820	18,309,305,8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75,832,644	0
비유동자산	107,819,168,401	100,387,853,44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0,154,209,692	22,179,265,186
장기금융상품	15,000,000	6,566,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944,205,619	2,323,271,5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	27,495,243,233	24,591,931,948
관계기업투자	0	280,129,505
유형자산	3,433,155,708	3,320,098,654
투자부동산	1,502,465,966	1,243,571,759
무형자산	2,681,346,318	2,022,531,316
사용권자산	5,020,859,838	0
이연법인세자산	23,665,721,255	35,576,043,423
기타비유동자산	1,906,960,772	2,285,010,129
자산총계	851,719,906,629	796,093,447,022
부채		
유동부채	357,569,806,807	309,867,712,24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75,149,341,060	185,683,785,568

초과청구공사	101,310,404,113	53,609,366,644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 채	31,525,310	31,525,310
당기법인세부채	17,109,699,535	15,983,763,259
기타총당부채	9,494,792,910	5,830,283,852
리스부채	4,378,603,173	0
금융보증부채	16,161,210,726	11,315,344,612
기타유동부채	33,934,229,980	37,413,643,001
비유동부채	36,307,487,497	118,604,722,66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1,500,000,000
장기차입금및사채	649,660,023	91,078,117,018
순확정급여부채	2,722,435,749	4,236,365,264
하자보수총당부채	23,470,794,065	17,072,759,117
리스부채	632,610,701	0
기타총당부채	7,619,689,058	418,575,457
금융보증부채(비유동)	491,814,128	3,843,355,361
기타비유동부채	720,483,773	455,550,448
부채총계	393,877,294,304	428,472,434,911
자본		
자본금	75,898,830,000	75,898,830,000
기타불입자본	36,305,423,272	36,305,423,272
이익잉여금	345,867,026,187	255,657,413,651
기타자본구성요소	(228,667,134)	(240,654,812)
자본총계	457,842,612,325	367,621,012,111
자본과부채총계	851,719,906,629	796,093,447,02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63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제 6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63기	제 62 기
매출액	1,279,913,145,407	965,572,042,704
매출원가	1,097,538,801,910	838,287,218,605
매출총이익	182,374,343,497	127,284,824,099
판매비와관리비	39,407,760,564	36,381,420,157
영업이익	142,966,582,933	90,903,403,942
금융수익	9,434,955,648	8,052,049,452
금융비용	2,987,092,908	4,149,515,593

기타이익	24,258,072,567	5,784,391,602
기타손실	41,773,094,984	12,256,105,1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1,899,423,256	88,334,224,287
법인세비용	36,803,000,960	23,800,237,833
당기순이익	95,096,422,296	64,533,986,454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6,265	4,251

(피합병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55 기 2019. 12. 31 현재

제 54 기 2019.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55 기	제 54 기
자산		
유동자산	411,070,919,142	356,478,969,470
현금 및 현금성자산	71,042,657,881	92,832,099,690
단기금융상품		76,485,36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9,305,151,254	83,976,592,548
재고자산	46,937,567,093	51,124,322,587
미청구공사	196,277,552,240	93,004,799,801
기타금융자산	1,306,941,860	998,336,445
기타유동자산	26,201,048,814	34,466,333,038
비유동자산	202,352,245,859	236,471,603,698
장기금융상품	13,000,000	13,000,0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8,269,000,000
투자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용자산	59,628,330,709	77,128,061,4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자산	127,691,774	275,459,283
공동기업투자주식	5,355,334,000	
투자부동산	6,955,406,057	7,106,285,686
유형자산	1,054,551,486	3,370,122,153
무형자산	3,956,313,930	3,961,220,036
사용권자산	3,508,011,149	
이연법인세자산	46,510,558,262	56,032,797,897
기타금융자산	75,243,048,492	50,315,657,210

자산총계	613,423,165,001	592,950,573,168
부채		
유동부채	267,121,465,231	419,430,912,92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86,948,730,788	123,341,302,301
초과청구공사	2,613,086,034	8,713,330,026
단기차입금	18,878,000,000	54,621,408,000
유동성장기부채	65,534,960	152,052,075,816
유동성사채		38,464,119,000
당기법인세부채	1,840,870,114	48,227,826
총당부채	27,387,446,778	31,298,167,011
금융보증부채(유동)	335,889,631	
기타금융부채	956,000,172	1,041,275,530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499,687,050	
기타유동부채	25,596,219,704	9,851,007,411
비유동부채	177,259,380,656	37,378,913,401
차입금 및 사채	140,933,851,896	1,638,374,000
확정급여부채	10,400,306,035	8,323,132,555
하자보수총당부채	13,808,352,969	13,543,568,283
금융보증부채	10,827,493,840	13,618,338,563
금융리스부채	1,043,875,916	
기타금융부채	245,500,000	255,500,000
부채총계	444,380,845,887	456,809,826,322
자본		
자본금	89,986,095,000	179,972,195,000
기타불입자본	89,918,956,680	23,176,819,710
이익잉여금(결손금)	(10,859,758,250)	(66,999,539,105)
기타자본구성요소	(2,974,316)	(8,728,759)
자본총계	169,042,319,114	136,140,746,846
자본과부채총계	613,423,165,001	592,950,573,168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55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제 54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5 기	제 54 기
당기순이익	34,327,669,895	621,453,659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11,958,107)	(1,133,760,23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되지 않는항목	(1,417,712,550)	(1,134,042,98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817,580,192)	(1,453,901,25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399,867,642	319,858,27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될 수 있는 항목	5,754,443	282,748
투자자산평가손익	7,377,491	362,49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623,048)	(79,749)
당기총포괄손익	32,915,711,788	(512,306,575)

※ 기타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건물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